

일 러 두 기

출원 방식심사 사례집

2017. 11

특 허 청

1. 본 사례집은 2017. 1월부터 2017. 10월까지 산업재산권 출원업무 방식심사 과정에서 출원인이 틀리기 쉽거나 특이한 사례, 관련규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하거나 자료로 남겨 향후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례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본 사례집은 2017. 11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허·상표법을 비롯한 산업재산권 관련법령 및 심사사무취급규정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3. 본 사례집에 수록된 내용은 출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출원 방식심사 연구회'를 개최하여 수집된 사례에 대하여 문제제기 및 처리방안, 개선사항 등에 대한 토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4. 본 사례집은 방식심사의 품질향상과 업무의 일관성, 연속성을 제고하고 방식심사 실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산업재산권 관련법령 및 심사사무취급규정 등을 구속할 수 없으므로 사례집의 내용을 법령해석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편 방식심사 일반사항

1. 방식심사의 의의	2
2. 법적 근거	2
3. 방식심사의 주체	4
4. 방식심사의 대상	5

제2편 방식심사 사례

1. 출원인 및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포괄위임 등록번호가 출원일 이후 철회된 경우	12
1.2 사회적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15
1.3 JP를 수리관청으로 출원한 국제출원으로 국내우선권 주장하여 국내출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8

2. 출원서류에 관한 사항

2.1 외국어 출원의 요약서 미기재로 제출되었으나 요약서 보정 명령을 보내지 못한 경우	22
---	----

3. 중간서류에 관한 사항

3.1 출원인(국내법인)이 출원서에 기재한 발명자 전체를 특허여부 결정전에 변경(삭제, 추가 등)한 경우	25
3.3 해산에 의한 청산절차 중인 특허법인이 소속 변리사에 대한 복대리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7

제3편 참고자료

1. 출원관련 수수료	30
2. 관련법령	
2.1 민법	41
2.2 민사소송법	52
2.3 상법	56
2.4 행정절차법	57
2.5 중소기업기본법	60
2.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61

제1편 방식심사 일반사항

1. 방식심사의 의의

방식심사란 출원서류가 접수된 후 심사관의 실체심사 전에 출원서류에 산업재산권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인의 절차능력, 서식의 기재방식, 첨부서류, 수수료 등 절차에 대하여 흠결이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적 근거

2.1 절차의 보정

절차의 보정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46조, 「실용신안법」 제11조, 「디자인보호법」 제47조, 「상표법」 제39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 「특허법」 제46조[절차의 보정]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에 그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3.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2.2 서류의 반려

절차의 반려에 대한 법적근거로는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24조, 「상표법시행규칙」 제25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42조·제90조·제92조의3·제132조의4·제140조 또는 제142조의2에 따른 특허출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록출원, 특허최소신청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건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 19.(생략)

-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서류 등을 제출한 출원인 등에 대하여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4호의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2.3 절차의 보완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아니하여 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적힌 사항이 선명하지 아니하여 상표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지정상품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한글로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등 절차의 보완에 대해서는 「상표법」 제37조에 규정되어 있다.

※ 「상표법」 제37조(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 ① 상표등록출원일은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출원서가 특허청에 도달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 5.(생략)

- ②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상표등록출원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절차보완에 관한 서면(이하 이 조에서 "절차보완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상표등록출원을 보완한 경우에는 그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 ⑤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을 부적합한 출원으로 보아 반려할 수 있다.

3. 방식심사의 주체

- (1) 방식심사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특허법」 제46조 및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행하는 검토 절차를 말한다. 방식심사 결과 흠결 내용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고 무효로 하거나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서류를 반려한다.[특법§46, 특칙§11, 규정§18(1)]

- (2) 방식심사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명의로 방식심사 담당부서(출원과, 국제출원과, 등록과 또는 심판정책과)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식심사에 따른 흠결 사항이 실제심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서류를 접수한 부서에서 처리하기에 부적절한 경우(공지예외주장 관련 등)에는 심사관이 방식심사를 한다.[규정§18(1), (2)]

심사관은 출원 및 이에 부대되는 신청, 주장 절차 등의 방식상 흠결이 방식심사 담당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일반적 사항으로 누락되어 이관된 경우에는 흠결 사항을 기재하여 그 서류를 방식심사 담당부서로 이관한다. 심사관으로부터 서류를 이관받은 방식심사 담당부서에서는 흠결사항을 검토하여 방식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관에게 관련 서류를 다시 이관한다.

4. 방식심사의 대상

방식심사의 대상은 관련법에 의하여 반려대상이 되는 사유와 보정대상이 되는 사유로 구분된다.

4.1 보정대상

보정사유는 (특§46, 실§11, 디§47, 상§39)

절차를 밟은 자의 절차능력에 흠결이 있는 경우로서 행위능력이 결여된 자(미성년자,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경우와 대리인이 특별수권을 받아야만 밟을 수 있는 절차를 특별수권을 받지 않고 밟은 경우가 있다.

또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잘못 첨부한 경우, 첨부서류가 불비한 경우, 기재가 잘못된 경우, 서명날인이 없는 경우 등이다.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도 보정사유에 해당된다.

가. 보정요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에 그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3.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나. 무효처분

(1) 심사관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허법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특허청장 명의로 절차의 보정을 요구한다.[특법§46]

보정요구서에는 출원의 서지적 사항, 보정기간, 보정할 서류, 보정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절차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 및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보정할 사항은 특허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상 요건에 위반된 내용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보정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특법§16]

보정요구서에서 지정하는 절차의 보정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

- (2)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여 절차상의 흠결이 치유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진행한 날에 소급하여 보정된 상태로 진행한 것으로 본다. 지정기간 이내에 보정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흠결을 치유하지 못한 경우 해당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심사한다.

- ① 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절차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지정기간 경과 후 무효처분통지서의 발송일(이하 ‘무효처분일’이라 한다) 이전에 보정서가 제출되어 절차의 흠결이 치유된 경우 무효로 하지 아니하고 보정서를 수리한다. 무효처분일 후에 제출된 보정서는 반려한다.

무효처분일 이전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무효처분 당시 보정서의 제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무효처분한 경우, 보정사항을 검토하여 흠결을 해소한 경우에는 무효처분을 취소하고 보정을 인정한다. 무효처분일에 제출된 보정서도 동일하게 취급한다.

- ② 절차상 흠결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
보정요구에 따라 보정이 완료된 후에 새로운 절차상 흠결이 발견된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정을 요구한다. 이 경우 각각의 보정에 대하여 보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1회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었던 사항을 누락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추가로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정 사항의 보정에 대하여는 보정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증보정료납부요령§3, 특허청고시 2009-19 참조)

- ③ 보정요구와 무관한 보정사항을 포함하는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보정요구에 따른 보정서가 아직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정요구의 취지와 무관한 자진보정서가 제출된 경우 그 보정서를 수리한다. 이때 그 보정사항이 보정료 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 보정을 요구한 사항의 일부만 보정한 경우

하나의 보정요구서로 2이상의 절차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지정기간 내에 제출된 보정서가 흠결의 일부 절차만을 보정한 경우에는 흠결이 치유되지 않은 절차만을 무효로 한다. 2이상의 보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보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보정으로 보아 매회 보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보정서 없이 보정내용만 제출한 경우

보정서 서식을 이용하지 않고 보정내용만 제출한 경우에는 일단 수리하고 보정서가 방식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정절차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한다. 한편, 그 서류의 종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반려하여야 하며, 서식의 흠결이 경미한 경우에는 따로 보정요구를 하지 않고 수리할 수 있다.

방식에 위반된 보정서가 지정된 기간 내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보정되지 않은 경우 그 보정서에 의한 보정절차를 무효처분하고, 보정절차의 무효처분에 따라 원래 지적한 흠결이 치유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무효 처분한다.

(3) 특허에 관한 절차의 무효처분 주체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며 심사관이 될 수 없다. 무효처분의 대상은 출원절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특허에 관한 절차이면 모두 해당된다.[특법§16]

무효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절차를 밟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무효처분통지서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부기한다.

(4) 제3자가 심사청구한 출원으로서 보정에 의해 청구항이 증가하여 출원인에게 심사청구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보정을 요구한 경우 출원인이 그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세서에 관한 해당 보정절차를 무효로 한다.[특법§82(2), 특법§16(1)]

(5) 출원이 무효된 경우 특허법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며, 그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할 수 없다.[특법§36(4)]

또한, 출원이 무효로 된 경우 그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특법§65(6)]

4.2 반려대상

(1)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 등을 제출한 출원인, 심사청구인 또는 제출인(이하 '출원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기재한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특칙§11, 규정§19]

(2) 반려취지 등을 서면으로 송부받은 출원인 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명서를, 소명 없이 출원서류 등을 소명기간 이내에 반려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칙§11(3)]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 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여야 하며, 「특허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요구를 받은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반려이유를 기재하여 출원서류 등을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 [특칙§11(4)]

출원인 등이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의 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반려처분 시에는 그 이유를 명기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서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병기하도록 한다.

(3) 소명기간 중 출원인 등은 반려이유 통지에 대한 소명이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나, 반려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보정서의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고) 절차상 보정대상은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뜻하며, 이와 같은 형식적인 문제를 벗어나 외국인이 권리능력을 가지는가 또는 출원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공동발명의

경우) 등의 실질적인 사항에 관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실질적인 사항에 관한 것은 곧바로 수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수는 없고, 일단 수리한 다음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심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2.9.28. 선고 80누414 판결 참조).

4.3 보완대상

(1) 보완의 대상

『절차의 보완』이란 출원일의 인정과 관련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가)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 (나)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아니하여 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다)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적힌 사항이 선명하지 아니하여 상표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
- (라) 지정상품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 (마) 한글로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2) 보완명령

- (가) 특허청장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대상, 근거규정, 보완기간 등을 명시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완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 (나) 보완명령은 출원과 방식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보완이 필요한 서류가 착오로 심사관에게 이송된 경우 방식심사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보완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보완의 효과

- (가)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보완한 경우에는 그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이 상표등록출원일이 된다.

- (나)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해당 상표 등록출원은 부적합한 출원으로 반려할 수 있다.

※ 출원서류 이력 파악

접수발송번호를 통한 서류 이력 파악하는 방법으로 특허청에 접수 또는 발송되는 서류에는 접수/발송번호 부여체계에 의해 고유 번호가 부여된다.(예, 9-5-2002-0226179-05, 총15자리)

구 분	자릿수	내 용
업무구분	1	1 출원, 2 등록, 3 수수료, 4 출원인/대리인 5 열람제증명, 6 국제출원, 7 심판, 8 결재/발송 9 심사
접수발송구분	1	0 접수(반도체), 1 접수, 5 청외발송(온라인), 6 청내발송(온라인)
접수년도	4	
온라인서면구분	1	0 온라인, 5 서면
일련번호	6	
Check digit	2	

포괄위임등록번호가 출원일 이후 철회된 경우

사건 개요

- 상표등록출원 시(2017. 2. 8.)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였으나, 해당 포괄위임등록번호의 만료일이 2017년 2월 14일이었음
- 화면방식이관일(2017. 2. 15.) 기준으로 포괄위임등록번호가 만료되어, 수리 이후 포괄위임등록번호가 유효하지 않음

출원번호 : 40-2017-16330

접수번호 : 1-1-2017-0132728-16

■ 출원심사 이력

접수/발송일	접수/발송번호	서류명	특기사항
2017. 2. 8.	1-1-2017-0132728-16	상표등록출원서	

■ 문제 제기

- 2017. 2. 8. 출원 시 기재한 포괄위임등록번호가 2017. 2. 14. 철회되어 화면방식이관일인 2017. 2. 15. 기준으로 유효하지 않음
- 「상표법 시행규칙」 제3조(포괄위임)에서 포괄위임은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해 사건을 특정하지 않고 위임하는 것이므로, 출원일 당시에는 위임관계가 성립했다더라도 상표등록 출원서의 수리 전 만료된 포괄위임 등록번호는 장래의 절차에 대한 위임관계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
- 이에 대리인에게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철회 이후 새로운 포괄위임등록 번호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새 포괄위임번호로 보정하는 방법을 제의함

제 2 편 방식심사 사례

1. 출원인 및 대리인에 관한 사항

- 그러나 새로 발급받은 포괄위임번호로 보정할 경우 출원일 당시에는 해당 포괄위임번호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출원일에는 위임관계가 성립되지 않음
- 현재 및 미래의 특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위임하는 포괄위임의 특성상 이미 만료된 포괄위임등록번호가 기재된 출원서를 수리할 경우 장래의 사건에 대한 위임관계가 보장되지 않으며, 새로 발급받은 포괄위임번호로 보정할 시 출원일 당시의 위임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

■ 처리 결과

- 본 사례는 특허넷 시스템을 거치는 과정에서 출원일 이후 포괄위임번호가 철회된 것을 확인한 경우이므로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함
- 출원일 당시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가 유효하여 장래의 절차에 대해서도 위임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수리함
- 출원일 이후의 절차에서는 대리인 사임 후 선임 절차를 진행하거나, 새로 발급받은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중간 서류 단계에서는 이미 위임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시스템에 출력되기 때문에 새로운 포괄위임등록번호 또는 위임장에 대한 확인이 소홀할 수 있음
- 이에 이런 사례에서 수리할 시, 포괄위임등록번호의 만료기간을 메모하여 출원서 수리 이후 절차에서 담당자들이 해당 절차 기준으로 위임관계가 성립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규정

[상표법 시행규칙 제3조(포괄위임) 제1항]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게 포괄위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에게 포괄위임에 대해 설명하고 포괄위임장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2(포괄위임)]

제5조의2(포괄위임)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포괄위임장"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에게 포괄위임에 대하여 설명하고 포괄위임장에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포괄위임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포괄위임을 받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번호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포괄위임을 하거나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온라인 제출하거나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포괄 위임장에 제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서명을 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2.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출원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포괄위임장의 전자적 이미지를 첨부하여 제출

사회적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건 개요

- 사회적기업의 지점이 중소기업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중소기업 감면을 받고자 함
- 이에 지점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을 거절하였고 대리인은 지점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공문을 제출함

출원번호 : 10-2017-0018017

접수번호 : 1-1-2017-0135391-48

출원심사 이력

접수/발송일	접수/발송번호	서류명	특기사항
2017.02.09	1-1-2017-0135391-48	특허출원서	
2017.02.14	1-5-2017-0021773-84 (1-1-2017-0135391-48)	보정요구서	
2017.02.22.	1-1-2017-0183284-20 (1-5-2017-0021773-84)	보정서	

문제 제기

- 특허출원의 경우 권리능력이 없는 지점은 출원을 할 수 없고 이에 본점을 출원인으로 하는 특허를 출원함
- 특허출원서를 제출하면서 지점만 해당되는 사유를 통해 감면을 요청함
-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하나의 법인이므로 법인 전체에 해당하는 감면사유가 없다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사례에서는 지점 자체를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중소기업청의 공문을 추가로 제출함
- 지점이 중소기업으로 간주될 경우 이를 인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됨

처리 결과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의 형태를 갖춘 경우 설립할 수 있고 제한적이나마 지점 또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사회적기업에 해당된다는 사유만으로 현재 특허청에서 지원하는 수수료 감면은 없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점은 감면을 받을 수 없음
- 이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협회 인천점은 해당 지점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한다는 중소기업청의 공문을 제출하여 본사가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주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제33조는 특별법인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두고 있으나 이는 해당 법령의 적용에만 한정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의미하지는 않음 (예시 10-2016-110526)
- 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특허출원도 그에 따른 수수료감면도 불가능하고 실사 타법이나 기관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이를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볼 수는 없음

■ 관련 규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자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특별법인등의 중소기업간주)]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 <개정 2011.3.30., 2016.1.27.>

1.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JP를 수리관청으로 출원한 국제출원으로
국내우선권 주장하여 국내출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개요

- PCT/JP2016/00345의 국제출원을 국내우선권 주장으로 「특허법」 제203조 서면이 아닌 국내출원을 하고자함.
- 조약우선권이 국내우선권주장으로 출원이 가능한지 여부
- 공지에외주장으로 출원일의 소급효과가 가능한지 여부

출원번호 : 10-2017-0093027

접수번호 : 1-1-2017-0704954-34

■ 출원심사 이력

접수/발송일	접수/발송번호	서류명	특기사항
2017.07.21	1-1-2017-0704954-34	특허출원서	
2017.07.25	1-1-2017-5015150-10	[우선권증명서류] 서류제출서	

■ 문제 제기

- 출원서의 우선권 주장란 밑에 출원 국가명은 우선권을 주장한 출원 국가명을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우선권 주장을 하고자 하는 나라를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 PCT/JP2016/00345를 국내우선주장으로 국내출원을 하고 싶은 경우, 출원서에 [우선권 주장]란 밑에 [출원국가명] KR을 기재하고 출원번호에는 PCT 출원번호를 기재한 경우에 국내우선권 주장으로 출원이 가능한지 여부?

- PCT/JP2016/00345이 국내우선권주장을 하고, 공지예외주장을 하였다면, 공지예외주장가능 출원기간이 기준이 국내출원인지? 우선권주장일인지?

■ 처리 결과

- 출원서 기재요령에

[예] 【우선권주장】

- 【출원국명】
- 【출원번호】
- 【출원일자】

출원 국가명은 우선권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서 기재하는 항목이며, 출원 국명이 KR인 경우에는 국내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고, 출원 국가명이 그 외 국가인 경우에는 조약우선권 주장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 출원서의 우선권 주장에서 출원 국가명은 선출원(우선권대상)의 출원 국가를 기재하는 것은 아님.

- PCT 출원인 경우에 국내우선권 주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 모든 PCT 출원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 ① 국내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PCT 출원(지정국에 한국 포함)을 하는 경우
 - ② PCT 출원(지정국은 한국 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PCT 출원(지정국에 한국 포함)을 하는 경우
 - ③ PCT 출원(지정국에 한국 포함)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국내 출원을 하는 경우

이 건의 경우에는 ③에 해당하여 지정국 중 한국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 출원을 할 수 있음. (지정국 확인은 출원서의 첨부물로 가능, 모든 지정국은 한국을 포함함.)

出願人である (applicant only)
すべての指定国 (all designated States)

- 이 건은 우선권주장은 2016. 7. 25 PCT 출원으로 하고, 2017. 7. 21 국내 출원을 하였고, 공지예외 주장은 PCT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5. 8. 28.에 주장을 하여 출원서에는 방식에 하자가 없어 수리 처리됨

- 이 건의 출원인은 「특허법」 제203조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국제출원일도 쉽게 인정되고, 공지예외 주장 또한 간단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특허법」 제203조 서면 출원인 경우는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건은 국제출원 후 명세서가 일부 수정이 되어 번역문과 내용이 불일치하여 「특허법」 제203조 서면으로 출원을 못하여, 국내우선권 주장으로 국내출원을 하여 우선주장으로 국제출원일도 인정을 받고 더 나아가 공지예외 주장으로 출원일의 소급효과까지 인정받는 특이한 사례임.

*출원서의 우선권에 대한 기재요령은 2017. 7. 21. 제도과의 회의에서 최종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함.

■ 관련 규정

【특허법 제199조(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 ①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 조약우선권주장의 경우는 특허법 제30조 적용에 있어 출원일이 소급되지 않으나 국내우선권주장은 출원일이 소급된다.[특법55(3)]

지침서, 4. 국내우선권주장 절차

제 2 편 방식심사 사례

2. 출원서류에 관한 사항

외국어 출원의 요약서 미기재로 제출되었으나 요약서 보정명령을 보내지 못한 경우

사건 개요

- 출원 시(외국어 출원) 요약서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출원하였으나, 방식심사 시 요약서 보정을 하지 않고 수리 처리 됨.
- 대리인 측에서 자체적으로 보정하는 방법이 없어 혼란.

출원번호 : 10-2016-0155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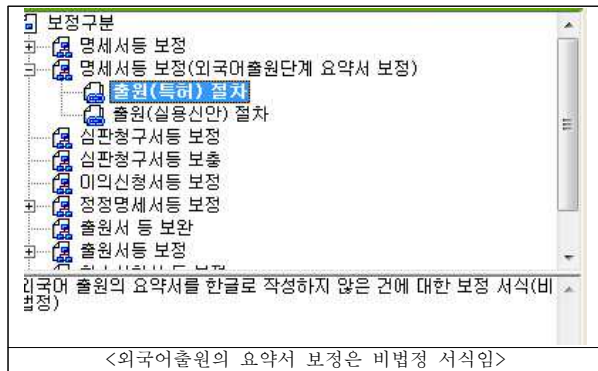
접수번호 : 1-1-2016-1137053-67

■ 심사 이력

접수/발송일	접수/발송번호	서류명	특기사항
2016.11.21	1-1-2016-1137053-67	특허출원서	정상 36,500
2016.11.25	1-5-2016-0169152-32	청구범위 제출유예 안내서	
2017.02.03	1-1-2017-0115798-58 <1-1-2016-1137053-67>	명세서등보정서(외국어출 원의요약보정)보정서	
2017.02.06	1-1-2017-0121556-13	[국어번역문]서류제출서	
2017.02.06	1-1-2017-0121558-04	명세서등 보정서	정상 4,000
2017.02.06	1-1-2017-0121559-49	심사청구서	정상 467,500

■ 문제 제기

- 방식심사 시 요약서 미기재 또는 10자 이내 기재 시 전산방식에서 요약서 내용을 확인하여 보정을 보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방식심사 시 이를 간과하고 수리처리 됨.
- 영어 출원으로써 대리인 측에서 이권에 대해 국어번역문 제출 및 청구항 보정과 심사청구를 하려고 해당 건을 살펴본바 요약서 내용이 없어 보정 방법에 대해 문의(자진 보정이 불가 함)
- ※ 전자출원SW 내에서 명세서등보정서(외국어출원의 요약서 보정) 서식 작성 시 통지에 의한 보정만 가능하도록 아래 <그림 1>과 <그림 2>와 같이 제한 됨



<그림 1>

<그림 2>

제 2 편 방식심사 사례

3. 중간서류에 관한 사항

■ 처리 결과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가 없이는 전자출원SW에서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이 불가능하여 대리인 측에 재방식을 제안했으나, 서류만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여 다른 출원 건에 보정요구서의 발송번호를 임시로 사용하여 대리인 측에 발송번호를 알려주고 접수 시 점검사항을 무시하고 접수를 하도록 안내
- 위 건에 보정서가 접수된 후 방식심사 시 전산방식 결과에 발송번호가 관련 없다고 나오게 되며, 발송번호를 접수번호로 직권정정 한 후 수리처리
 - ※ 결재 완료 후 이관 및 DB에 입력이 잘 되었는지 확인 필요.

■ 관련 규정

- ※ 특허법 제21조(특허출원서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 7. 생략

출원인(국내법인)이 출원서에 기재한 발명자 전체를 특허여부 결정전에 변경(삭제, 추가 등)한 경우

사건 개요

- 출원인(국내법인)이 출원서에 기재한 발명자(강충길 외 3명) 전체를 특허여부 결정전에 새로운 발명자(홍지훈 외 4명)로 모두 변경하는 출원서등 보정서를 제출하여 수리 함.
- 삭제된 발명자(강충길 외 3명)가 국민신문고(접수번호 : 2AA-1601-239326)를 통해 원래의 발명자 모두를 없애고 출원인 맘대로 새로이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들로 교체가 가능한지 여부의 민원을 제기함.
- 상기 민원에 대한 답변 후 국민신문고(접수번호 : 2AA-1602-035680)를 통해 원래의 발명자를 강제 희망명예퇴직을 시킨 후, 해당 발명자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들(홍지훈 외 4명)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한 법률적 근거와 행정 처분에 대해 재차 민원을 제기함.

출원번호 : 10-2013-0158352

접수번호 : 1-1-2015-1209241-21

■ 심사 이력

접수/발송일	접수/발송번호	서류명	특기사항
2013.12.18	1-1-2013-1160447-78	특허출원서	
2015.12.10	1-1-2015-1209241-21	출원서등 보정서	최초 발명자 삭제 및 새로운 발명자 추가

2016.02.23	1-1-2016-0178679-09	출원서등 보정서	새로운 발명자 삭제 및 최초 발명자 추가
2016.12.26	9-5-2016-0931880-24	거절결정서	

■ 문제 제기

-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자가 진정한 발명자임을 주장하며, 출원인(국내 법인)이 출원인 등의 발명자 정정(변경, 삭제, 추가 등) 신고가 부당함을 주장.
- 출원서에 기재한 발명자는 출원인(국내법인)이 특허여부 결정전까지 적법하고, 자유롭게 정정(변경, 삭제, 추가 등)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나, 강제 희망명예퇴직 등 개인적인 문제점을 들어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거듭 주장함.

■ 처리 결과

- 해당 사건의 출원인(주식회사 두산) 및 대리인(지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과 협의하여 불만사항 및 문제점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권고함.
- 해당 사건 표시에 대한 출원인과 대리인이 제출한 출원서등 보정서(발명자 정정)를 통해 출원서에 기재한 발명자(강충길 외 3명)를 다시 추가함으로써, 민원인의 불만사항이 해결됨.

■ 관련 규정

[특허법 시행규칙]

제28조(발명자의 추가 등) ① 특허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특허출원서에 발명자 중 일부의 발명자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때에는 그 특허출원의 특허여부 결정 전까지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발명자의 기재가 누락(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누락에 한정한다) 또는 잘못 적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여부 결정 후에도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해산에 의한 청산절차 중인 특허법인이 소속변리사에 대한 복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사건 개요

- 법인해산으로 청산 과정 중에 있는 특허법인이 해당 법인소속 변리사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리하던 사건들을 이관하고자 함.
- 특허법인의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특허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변리사법 제6조의7에 의거 반려이유통지서를 발송함

출원번호 : 40-2016-0098582

접수번호 : 1-1-2017-0369846-97

■ 심사 이력

접수/발송일	접수/발송번호	서류명	특기사항
2017.04.17	1-1-2017-0369846-97	[복대리인선임]대리인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2017.04.19	1-5-2017-0053945-24	서류반려이유통지서	
2017.05.02	1-1-2017-0425966-60	[복대리인선임]대리인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수리

■ 문제 제기

- 법인해산으로 청산과정 중에 있는 특허법인이 해당 법인소속인 변리사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기존에 대리하던 사건들을 이관하고자 함.

- 해산으로 청산과정에 있는 법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 및 법인소속 구성원이었던 자를 변리사법 제6조의7에 의거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 처리 결과

- **청산중에 있는 법인이 복대리인 선임권이 있는지 여부**
「상법」 제2장 제6절 청산규정에 의해 청산중에 있는 법인은 해산하더라도 청산절차가 끝날 때까지 현존사무를 종결할 수 있는 직무권한이 있으므로 복대리선임권이 있음(산업재산인력과 답변)
- **법인구성원이었던 변리사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특허법인 해산절차에 따라 소속변리사는 법인으로부터 탈퇴되어 개인 변리사로 활동가능하나, 법인구성원 탈퇴여부를 신고하기 전까지는 법인 소속변리사로 확인되므로 복대리인으로 선임되고자 할 시 특허청에 법인 구성원임이 아님을 사전 신고한 후 개인변리사로 활동 가능
- 대리인정보변경으로 법인구성원 탈퇴 신고한 후 제출된 복대리인 선임 신고서에 한해 수리처리 함(신고 전 제출된 복대리인 선임신고서는 반려 처분 됨)

■ 관련 규정

[변리사법] 제6조의7(구성원 등의 업무제한)

- ① 특허법인의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특허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개정 2013.7.30.>
- ② 특허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사람 또는 소속변리사였던 사람은 그 특허법인에 소속된 기간 중에 그 특허법인이 수임하거나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특허법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7.30>

제 3 편 참고자료

1. 출원관련 수수료

[1] 출원관계 수수료 일람

• 출원료 (2016.8.1. 기준)

구 분	권 리	특 허	실용신안	디 자 인		상 표
				심 사	무 심 사	
전자출원 (온라인, FD)	기본료	46,000원	20,000원	94,000원	1디자인마다 45,000원	1상품류구분마다 62,000원
서면 출원	기본료	66,000원	30,000원	104,000원	1디자인마다 55,000원	1상품류구분마다 72,000원
	가산료	명세서·도면·요약 서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가산	명세서·도면·요약 서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가산	없음	없음	없음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료 : 매년 300,000원

• 우선권주장 신청 및 추가료, 심사 및 우선심사청구료

구 분	권 리	특 허	실용신안	디 자 인		상 표
				심 사	무심사	
우선권주장	신청료	1우선권 주장마다 18,000원	1우선권 주장마다 18,000원	1우선권 주장마다 18,000원	1우선권 주장마다 18,000원	1 상품류 구분마다 18,000원
	추가료	1우선권 주장마다 18,000원	1우선권 주장마다 18,000원	없음	없음	없음
심 사 청 구 료	기본료	143,000원	71,000원	없음	없음	없음
	가산료	청구범위 1항마다 44,000원을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19,000원을 가산	없음	없음	없음
재 심 사 청 구 료	기본료	100,000원	50,000원	없음	없음	없음
	가산료	청구범위 1항마다 10,000원을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5,000원을 가산	없음	없음	없음
우선심사 신청료		200,000원	100,000원	70,000원	70,000원	160,000원

[2] 변경 및 분할출원료, 이중출원료

○ 변경출원료

- 특허 ↔ 실용신안 : 해당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 상표 ↔ 서비스표 : 매건 전자 9,000원 / 서면 10,000원

○ 분할출원료 : 해당 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단, 복수디자인등록출원(2014.7.1.이후출원)의 경우 아래의 금액을 적용

- 동일(심사/일부심사)출원으로 분할하는 경우 :
전자 1디자인마다 10,000원/서면 20,000원
- 일부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으로 분할하는 경우 :
전자 1디자인마다 59,000원 / 서면 69,000원
- 단, 다류지정 상품등록출원 분할의 경우 : 분할되는 출원마다 10,000원

[3] 보정료

○ 절차보정(위임장 미제출 등) 또는 내용보정(명세서·도면·견본 등)보정서

제출 : 전자 매건 4,000원, 서면 매건 14,000원

○ 디자인변경 보정료 (2005. 7. 1. 이후 출원은 서지사항보정서로 작성)

- 단독 ↔ 관련 동일(심사 / 일부심사)출원 보정은 상기 보정료와 동일
- 무심사 → 심사 변경은 전자 : 53,000원, 서면 : 63,000원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 보정 :
- 1일련번호의 디자인마다 전자 4,000원, 서면 14,000원

○ 디자인 재심사 청구 보정료

- 동일(심사 / 일부심사)출원보정 : 전자 30,000원, 서면 40,000원
- 일부심사 → 심사 변경 보정 : 전자 79,000원, 서면 89,000원

○ 상품류구분 또는 지정상품 보정료 : 전자 매건 4,000원 / 서면 14,000원

단 • 보정 후 상품류 구분의 수가 보정 전 상품류 구분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상품류 구분마다 전자문서 제출 시 62,000원 가산, 서면 제출 시 72,000원 가산

- 2012. 4. 1. 이후 출원부터 보정 후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 초과 시 지정상품마다 2,000원 가산
-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대상인 출원에 대한 보정인 경우에는 보정 후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대상 상품이 보정 전보다 증가된 상품마다 2,000원 가산

○ 보완료

-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절차 보완료 : 매건 10,000원
- 디자인출원 절차보완료 : 전자 4,000원 / 서면 14,000원

○ 출원인 변경 신청료

- 전자 매건 11,000원 / 서면 매건 13,000원
- 상속에 의한 경우 : 전자 매건 5,000원 / 서면 6,500원
-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2006. 5. 1. 신청일부터 적용) :
전자 매건 5,000원 / 서면 매건 6,500원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상표 제외)

○ 법정(지정)기간 또는 기일연장 신청료

- 1회 20,000원, 2회 30,000원, 3회 60,000원, 4회 120,000원,
5회 이상 : 240,000원

○ 외국어 국제특허·실용신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연장료 :

20,000원(1회 / 1개월에 한함)

○ 비밀디자인청구료 : 전자 1디자인마다 18,000원 / 서면 1디자인마다 20,000원

○ 디자인등록 출원공개 신청료 : 전자 1디자인마다 21,000원 / 서면 1디자인마다 24,000원

○ 이의신청료 : 1디자인마다/1상품류 구분마다 50,000원

※ 보정료 납부대상

권리별	보정료 납부대상	
	보정사항	보정료 납부범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공통	1. 위임장 2.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 관련 수수료 3. 심판청구이유 4. 번역문 5.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6. 서식의 규격 및 지질 7. 심판청구서 부분 8.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시 첨부서류	①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포괄위임인 경우 출원서에 포괄위임 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② 서명, 날인이 없거나 선명하지 않은 경우 및 정당하지 않은 인장을 날인한 경우 ③ 위임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한 경우 ④ 위임자 및 수임자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한 경우 ⑤ 사건의 표시(출원번호 등)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한 경우 (삭제) ①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① 특허법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삭제) (삭제) (삭제) ①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②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수 있는 도면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③ 등록상표와 대비될 수 있는 상표견본 및 그 사용상품목록(등록된 소리상표와 대비될 수 있는 소리파일, 냄새상표와 대비될 수 있는 냄새견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권리별	보정료납부대상	
	보정사항	보정료납부범위
특허· 실용신안	1. 명세서 (도면포함)	① (삭제) ② (삭제) ③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출원서에 서열목록을 전자파일로 첨부 하지 아니한 경우 ④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2. 정정심판청구의 필요적 기재서류	① 전용권자, 질권자,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등의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디자인	3. 무효심판 절차에서의 정정 청구의 필요적 기재서류	① 전용권자, 질권자,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등의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도면 2. 출원변경	① (삭제) ②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① 관련디자인 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 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 출원을 관련디자인 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의 경우 ② 디자인심사 등록출원을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의 경우

권리별	보정료납부대상	
	보정사항	보정료납부범위
상 표	1. 단체표장의 경우 정관	①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 사항 미비로 인해 보정하는 경우
	2. 지정상품의 보정	① 지정상품이 포괄명칭이란 이유로 보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경우 i) 상표법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1(상품류 구분)의 명칭을 동일하게 기재한 경우 ii) 지정상품을 “---부품, ---부속품, 기타 ---, 각종 ---다른 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 등과 같이 표기하는 경우
	3. 견본의 보정	① 견본을 보정하는 경우
	4. 증명표장의 경우 정관 또는 규약	①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미비로 인해 보정하는 경우
	5. 소리상표, 냄새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의 시각적 표현 보정	① 소리, 냄새상표 등의 시각적 표현을 보정하는 경우
	6. 업무표장의 경우 지정업무 경영 사실 입증 서류	①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지정업무경영사실 입증서류 기재사항 미비로 인해 보정하는 경우

[5] 출원료 등의 면제 및 감면 안내

면제 및 감면 대상 수수료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 ※ 상표는 면제 ·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전액(100%)면제대상 및 증명서류

면제대상	요 건	증명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자	발명 (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참전유공자(본인)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증명 서류
학생(초·중·고의 재학생에 한함)		재학증명서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		없음
군복무 중인 일반사병, 공익근무 요원, 전환복무수행자 (‘12. 4. 1.이후 출원·심사청구· 설정 등록하는 것부터 적용)		복무증명서

- 적극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
-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특허
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서식
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 권리별로 각각 연간 1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에 한함

85%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감 면 대 상	요 건	증명서류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자	발명 (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없음
만 65세 이상인 자		

70% 감면 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요 건	증 명 서 류
개 인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없음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 중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기준에 맞을 것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별표3]의 기준에 맞을 것 2.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에서 발급) 또는 직전 3개 사업 연도의 자산총액·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단,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중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 중에서 지분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기준에 맞으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기준에 맞을 것 2.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3년 제출유예 인정 서류 - 직전 3개년도 손익계산서, 표준손익 계산서, 중소기업등 기준검토표

1.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입,
2.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3. 소기업 및 중기업의 증명서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유효한 것에 한함
4. 다만, 개인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별로 각각 연간 2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감면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각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르크,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P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7. 농업, 임업 및 어업	A		
18. 광업	B		
19. 담배 제조업	C12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8.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29. 운수업	H		
30. 금융 및 보험업	K		
31. 도매 및 소매업	G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39. 교육 서비스업	P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50% 감면 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요 건	증명서류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이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한 경우 ※ 2006. 5. 1. 이후 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출원료 또는 심사청구료에 한함	대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1. 국·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 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및 학교법인인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간연구비의 1/2이상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인·단체	해당 증명서류 - 설립 근거 법률 - 정관 -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 하였음에 대한 증빙
전담조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방자치 단체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없음

1. 적극적인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및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감면대상이 아님
단, 전담조직의 경우에는 적극적인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50% 감면
2.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3.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30% 감면 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요 건	증명서류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

적극적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및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감면대상이 아님

2. 관련 법령

2. 1.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9조(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85조(해산등기)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86조(해산신고)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①청산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93조(청산중의 파산) ①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책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응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응답을 말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66조(공유물의 부담) ①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 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가정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청구나 제3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25조 및 제954조를 준용한다.

1.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2.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3.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⑥가정법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미성년후견인 선임 후 양육 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910조(자의 친권의 대행)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①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 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 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③삭제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약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약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 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2. 2. 민사소송법

제51조(당사자능력·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소송능력(訴訟能力), 소송무능력자(訴訟無能力者)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53조(선정당사자) ①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②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54조(선정당사자의 일부의 자격상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①미성년자 또는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2. 피성년 후견인이 「민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②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제56조(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규정) ①미성년후견인, 대리권 있는 성년후견인 또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이 상대방의 소 또는 상소 제기 관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후견 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법정대리인의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認諾)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 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다만, 후견 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제57조(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외국인은 그 본국법에 따르면 소송 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소송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8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①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또는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를 선정하고 바꾸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제59조(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補正)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만일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하기 전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追認)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61조(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①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이 당사자인 경우, 그 친족, 이해관계인(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 대리권 없는 한정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受訴法院)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에게 소소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2. 법정대리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3.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

②법원은 소송계속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개임 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③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다. 특별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된다.

④특별대리인의 선임·개임 또는 해임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그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특별대리인의 보수, 선임 비용 및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제62조의2(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 ①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다만, 특정 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도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행위가 본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63조(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①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법원에 법정대리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6조제2항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꾸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동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6조(통상 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③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 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①법원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허가결정의 정본을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추가될 당사자에게는 소장부분도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3. 상 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83조(원수, 임기) ①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제3항, 제335조의3제1항·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 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⑤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 제3항·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 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제391조(이사회 결의방법) ①이사회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②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제368조제3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2. 4. 행정절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2.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한다.

3.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4. “당사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 나.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 관계인

5.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6.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7. “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8.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6.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7.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 절차에 따른 사항
9.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조정·중재(仲裁)·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처분의 신청) ①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 ③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⑥ 행정청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 ⑦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⑧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取下)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신청의 성질상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 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삭제
-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2.6.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기업의 주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 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 1)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 2)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 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등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영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 삭제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를 말한다.
 - ④ 삭제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 중 평균매출액 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②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평균매출액 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본다.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 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제7조의2(자산총액) ①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로 한다.

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자산총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제8조(소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1.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2. 중소기업이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 3.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4. 삭제